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258호, 2024.02.13. 공포, 2024.8.14. 시행)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방법 등, 기탁·등록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가점 반영, 공개기한 설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 및 권익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방법에서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3항후단)

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시 공개 기한 설정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4항)

다.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자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지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제6항)

라.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반복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초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재위반으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 (안 별표 1)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안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5.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탁확인증”을 “기탁·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해야 한다”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 기탁·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평가 전까지 기탁·등록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한 생명연구자원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의 절차와 기간을 준용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 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단계평가 및 최종 평가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선정 평가 시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실

적, 분양·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지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지정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및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6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4개월	지정취소
다.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4개월	지정취소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탁·등록의 방법)	<u>제5조(기탁·등록의 방법 등)</u>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u>기탁확인증</u> 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u>기탁·등록확인증</u> ----- ----- -----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하는 경우에는 <u>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해야 한다.</u> 이 경우 해당 기탁·등록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 ----- ----- <u>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 기탁·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평가 전까지 기탁·등록해야 한다.</u> ----- ----- -----, ④ <u>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한 생명연구자원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u>
<신설>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행령 제35조의 절차와 기간을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단계평가 및 최종 평가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선정 평가 시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실적, 분양·활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⑦ ----- 제6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첨단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기술팀	
연 락 처	044-202-6181